

부산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가단174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2. 8.

판 결 선 고 2023. 2.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2. 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9. 12. 13. 접수 제657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2314호 양수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5. 12. ‘C는 원고에게 12,010,321원 및 그 중 1,246,947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6. 9. 확정되었다.

나.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9. 2. 8. 사망하였다. C는 망 D의 자녀로 1/3의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 2. 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8.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C와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망 D을 오랫동안 부양해 온 대가를 인정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이는 망 D이 C에게 4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사전증여액이 C의 상속지분액을 초과하므로 C의 상속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그 미달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데, 이때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망 D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C가 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 어렵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경아

별지